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95

발의연월일: 2020. 11. 20.

발 의 자: 강득구·강민정·김승원

박찬대 • 양이원영 • 양정숙

오영환 · 윤영덕 · 이규민

이용빈 · 홍성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하 도록 하고, 각종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회교육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인 「사회교육법」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평생교육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 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법률 제 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으로,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사회교육에"를 "평생교육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회교육시설"을 각각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회교육시설"을 각각 "평생교육시설" 로 한다.

제17조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21조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	제10조 <u>(평생교육)</u> ① <u>전 국민을</u>
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u>사회</u>	<u>대상으로 하는 모든평</u>
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u>생교육</u>
② <u>사회교육</u> 의 이수(履修)는 법	② <u>평생교육</u>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	③ <u>평생교육시설</u>
립·경영 등 <u>사회교육에</u> 관한	<u>평생교육에</u>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u></u>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u>사</u>	<u></u> 평생
<u>회교육시설</u> 을 설립·경영한다.	<u>교육시설</u>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	2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u>사회교육시설</u> 을 설립·경영할	<u>평생교육시설</u>
수 있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제12조(학습자) 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u>사회교육</u> 의 과정에	<u>평생교육</u>
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
자) ① 학교와 <u>사회교육시설</u> 의	자) ① <u>평생교육시설</u>
설립자 · 경영자는 법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	
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② 학교의 장 및 <u>사회교육시설</u>	② <u>평</u> 생교육시설
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	
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	
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	
하여 관리한다.	
③ 학교와 <u>사회교육시설</u> 의 교	③ <u>평생교육시설</u>
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	
개되어야 한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u>사회교육시설</u> 을 지도·감독한	<u>평생교육시설</u> .
다.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	②
16조에 따른 학교 및 <u>사회교육</u>	평생교육
<u>시설</u> 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	시설
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	

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 제21조(직업교육) ------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 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 ---평생교육-----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 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하여야 한다. 제29조(국제교육) ① (생 략) 제29조(국제교육) ① (현행과 같 음)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 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③ • ④ (현행과 같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③ • ④ (생 략)